

2025년 11월 28일 시행 디자인보호법 시행령/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정리

작성일: 2025.12.03. 작성자: 김웅 변리사(월비스변리사학원 / 해움특허법인)

1. 디자인보호법 시행령(대통령령)

- 1) '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'이 디자인 도면에서 삭제됨에 따라, 디자인공보(등록디자인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)에서도 삭제함.
- 2) '부분디자인 여부'가 디자인등록출원서에서 삭제됨에 따라, 디자인공보(등록디자인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)에서도 삭제함.

2.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(총리령)

- 1) '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'이 디자인 도면에서 삭제됨에 따라, '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'의 기재방법에 관한 별표 3을 삭제함.
- 2) '부분디자인 여부'가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서 삭제되고,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의 명칭도 적을 수 있게 됨(예: 컵 또는 컵의 손잡이).

참고사항.

위와 같이,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, '부분디자인 여부'가 디자인등록출원서에서 삭제되었음에도 2025년 11월 28일 개정 시행된 디자인심사기준에는 여전히 요지변경(p210, 211, 333, 334) 및 출원서 기재사항(p231)에서 '부분디자인 여부'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. 이는 지식재산처 심사 상황에 따른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험생분들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"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부분디자인 여부를 기재할 필요 없음"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.

끝.